

제428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21일(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4회 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기획재정부 소관
 - 국세청 소관
 - 관세청 소관
 - 조달청 소관
 - 통계청 소관
- 2024회 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기획재정부 소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6)
철회동의의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7) 철회동의의 건

상정된 안건

- 2024회 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 기획재정부 소관
 - 국세청 소관
 - 관세청 소관
 - 조달청 소관
 - 통계청 소관
- 2024회 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2
 - 기획재정부 소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6)
철회동의의 건 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7) 철회동의의 건 5

(14시09분 개의)

○위원장 임이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사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임기근 기획재정부2차관은 국무총리 주재 을지국무회의 참석을 사유로 불출석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세청 소관

다. 관세청 소관

라. 조달청 소관

마. 통계청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기획재정부 소관

(14시10분)

○위원장 임이자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가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이번 심사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15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총 10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금융성 채무를 재구성하거나 국가채무 성질별 분류체계 자체를 재검토하고 금융성 채무에 대한 분류기준 및 구성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세수결손 대응에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국회의 심의를 우회하여 대응하는 문제 및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하여 자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준 문제가 반복된 것에 대하여 향후 동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예비비를 예비비 사용원칙에 부합하도록 집행하며, 결산서에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를 구분하여 그 집행 내역을 국가 안전보장 활동에 사용한 내역 외에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고, 당해 연도 예비비 사용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현행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상환 방식은 불공정한 약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

서 원금 상환일과 이자 상환일을 일치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수립과 공개 등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 및 공개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재정부 소관 7개 기금 중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타기금 예수원금 상환의 만기를 연장하는 것을 지양하고,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검토하는 등 재정운용에 있어서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였고, 외국환평형기금에서 한국투자공사 자산운용 위탁수수료의 수수료율을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국회 예결산 심사 시 국회에 적정한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기후대응기금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을 확대하고 기금 수입의 외부재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임과 동시에 국세수입 전망 시점과 세입예산안 의결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세수오차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청에 대하여는 체납정리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세 체납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총 17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청에 대해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사전 구매검사의 확대, 통관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개장검사 시행, 유관 부처와의 협업 강화 등을 통해 위해물품의 반입증대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등 총 1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청에 대해서는 실물 ETF 운용을 위한 구리의 조달청 창고 보관이 민관공동비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재검토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의 타 부처 사업과의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계청에 대하여는 상품권 구매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향후 조치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총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특정업무경비가 비목의 취지에 부합하여 편성 및 집행되고 현장에서 수사, 감사, 조사 등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인원에게만 지급될 수 있도록 특정업무의 범주 및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특정업무경비의 지급에 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당해 연도 예비비 사용실적의 국회 제출 등 예비비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므로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한 활동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정일영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우선 그저께 전체회의 업무보고받는 시간에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제부총리님께서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부총리께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하셨으면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제가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시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PBR을 PER로 순간 착각을 하고 답변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점은 제 불찰이기 때문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그다음에 MSCI 선진지수 편입 등 중시 수요 기반 확충을 통해 자기자본을 활성화하고 또 시중자금 흐름이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대전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만간 신임 금융위원장이 임명되면 긴밀히 협의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가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철회동의의 건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7) 철회동의의 건 (14시19분)

○위원장 임이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법률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90조제2항은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법률안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철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9일과 8월 5일 국회의장으로부터 정태호 의원과 최은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었다는 통지와 함께 우리 위원회의 철회동의 여부를 알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동 법안에 대해서 철회동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된 결산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깊이 유념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국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임광현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세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관련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구 관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 이명구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4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

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보 조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백승보 조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달 업무에 반영해서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정한 조달시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달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형준 통계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장 안형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조언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통계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과 관련하여 소관 부처 기관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바로잡아야 할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조치해 주시고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도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전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동일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의 위원장인 제가 방해할 경우에 국회법상 신속한 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 법안심사는 여야 간사 합의와 위원회 내 논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 정치논리로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독주이며 우리 위원회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위원님들과 치열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협치의 결론을 만들어 내겠다고 약

속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이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는 관련 법안이 9개 계류 중이며 1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신속처리 안건제도는 본래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을 막고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보장을 위해 도입해 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직 물리적 충돌도 논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필요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국민의 삶과 경제에 중대한 위기를 불러올 사안도 아닙니다. 무엇이 그토록 급해서 숙의와 합의를 포기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 의도에 심각한 의문을 갖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청회와 현안질의를 열어서 국민 앞에서 충분히 따져 물으면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한 압박과 협박으로 위원회를 혼드는 형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 간사께서 협의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본연의 권한을 지키고—여당 간사님도 마찬 가지입니다—국민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당 간사께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호 위원** 잠깐만요.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임이자** 예, 한 말씀 하십시오.

○**정태호 위원** 민주당 간사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디서 그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한테 확인을 해 보셔야지요. 저한테 확인도 안 하시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박수영 간사님하고 소위에서 논의하는 그 날짜를 잡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것이고 또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가지고 본회의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은 가지고 지금 박수영 간사님하고 소위 일정을 잡는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시면 간사한테 확인을 해보시고 말씀하셔야지……

○**위원장 임이자** 김병기 원내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원내대표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으세요.

○**위원장 임이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와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정태호 간사님께서 그럴 일 없고 여야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 위원(22인)

권영세 김영진 김영환 박대출 박민규 박성훈 박수영 박홍근 안도걸 오기형
유상범 윤영석 이소영 이인선 임이자 정일영 정태호 진성준 차규근 천하람
최기상 최은석

○첨가 위원(4인)

김태년 안규백 정성호 조승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정지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제1차관 이형일
차관보 윤인대
재정관리관 안상열
기획조정실장 김진명
예산실장 유병서
세제실장 박금철
국고국장 황순관
국제금융국장 김재환

국세청

청장 임광현
차장 최재봉
기획조정관 김재웅

관세청

청장 이명구
기획조정관 이진희

조달청

청장 백승보
차장직무대리 이형식

통계청

청장 안형준
차장직무대리 이명호
기획조정관직무대리 이진석

【보고사항】

○의안 회부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최혁진 의원·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8)

이상 4건 8월 19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3)

이상 4건 8월 20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대통령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